

인천지방법원 2017. 3. 22 선고 2016가단1983 판결 [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청구 등]

전 문

원 고 A

피 고 B

변론 종결 2017. 3. 8.

판결 선고 2017. 3. 22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인천 강화군 C 대 469㎡ 중 별지 도면 표시 8, 9, 10, 11, 12, 13, 14, 15, 22, 21, 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28㎡ 지상의 담장, 보일러실 등 일체의 건조물을 철거하고, 위 ㄱ 부분 토지 28㎡를 인도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인정사실

갑 제1 내지 9호증(가지번호 포함)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측량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, ① 원고는 2015. 10. 2. 인천 강화군 C 대 469㎡(이하 '이 사건토지'라 한다)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, ② 피고는 2009. 6. 25. 이 사건 토지에 연접한 인천 강화군 D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의 단독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, ③ 현재 피고 소유의 담장, 보일러실 등 건조물(이하 '이 사건 건조물'이라 한다)이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8, 9, 10, 11, 12, 13, 14, 15, 22, 21, 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28㎡(이하 'ㄱ 부분'이라 한다)을 침범하여 위치하고 있는 사실이 각 인정된다.

2. 판단

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이 사건 건조물의 소유자인 피고가 별다른 점유권원 없이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중 ㄱ 부분을 불법점유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,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ㄱ 부분 지상에 있는 이 사건 건조물을 철거하고, 위 ㄱ 부분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.

3. 결론

그렇다면,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,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장민석

감 정 도

